

사업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10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 조정 금액	102	익금산입	02		
		103	손금산입	03		
		104	차가감소득금액 (101 + 102 - 103)	04		
	105	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107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104 + 105 - 106)	06			
② 과 세 표 준 계 산	108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108 = 107)				
	109	이월결손금	07			
	110	비과세소득	08			
	111	소득공제	09			
	112	과세표준 (108 - 109 - 110 - 111)	10			
159	선박표준이익	55				
③ 산 출 세 액 계 산	113	과세표준(112 + 159)	56			
	114	세율	11			
	115	산출세액	12			
	116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117	세율	14			
	118	산출세액	15			
119	합계(115 + 118)	16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120	산출세액(120 = 119)				
	121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17			
	122	차감세액	18			
	123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19			
	124	가산세액	20			
	125	가감계(122 - 123 + 124)	21			
	기한 납부 세액	126	중간예납세액	22		
		127	수시부과세액	23		
		128	원천납부세액	24		
		129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25		
		130	소계 (126 + 127 + 128 + 129)	26		
	131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132	합계(130 + 131)	28				
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133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134	차감납부할세액 (125 - 122 + 133)	30			
	135	등기자산	31			
136	미등기자산	32				
137	비과세소득	33				
138	과세표준 (135 + 136 - 137)	34				
139	세율	35				
140	산출세액	36				
141	감면세액	37				
142	차감세액(140 - 141)	38				
143	공제세액	39				
144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145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146	가감계(142 - 143 + 144 + 145)	41				
147	수시부과세액	42				
148	() 세액	43				
149	계(147 + 148)	44				
150	차감납부할세액(146 - 149)	45				
⑥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	161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162	세율	60			
	163	산출세액	61			
	164	가산세액	62			
	165	이자상당액	63			
	166	납부할세액(163 + 164 + 165)	64			
⑦ 세 액 계	151	차감납부할세액계 (134 + 150 + 166)	46			
	15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	57			
	153	분납세액계산범위액 (151 - 124 - 133 - 145 - 152 + 131)	47			
	154	분납할세액	48			
	155	차감납부세액 (151 - 152 - 154)	49			

작성 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⑩란부터 ⑳란까지, ㉑란, ㉒란 및 ㉓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㉔ 선택표준이익란에 선택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㉕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㉖ 과세표준란에는 ㉗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㉘~㉚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㉛양도차익, ㉜금액, ㉝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㉞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㉟란부터 ㊱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㊲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㊲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㉟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㉟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㊳, 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㊵ 익금산입란 및 ㊶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㊷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⑳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㊸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㊹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II.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㉒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㊺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㉑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㊻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㉒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㉓, ㉔, ㉕):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㉖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㉗ 지정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정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㉗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㉘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㉙ 차감세액란: ㉚란의 산출세액에서 ㉛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㉜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㉜란을 적습니다.
 13. ㉝ 중간예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이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㉝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㉞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㉞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㉟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가산세액란(㉟, ㊱):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6. 기납부세액 계란(㊲, ㊳)
 -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7. ㊴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8. 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㉑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㊶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㉒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㉒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을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㉒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0. ㊷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⑥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1. ㊸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을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작성 방법

- ①선박명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
- ②선박순톤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
- ⑤운항일수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
- ⑥사용률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
-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④1톤당1운항일 이익을 곱한 금액에 ⑤운항일수란에 기재된 일수와 ⑥사용률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외의 선박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4.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⑧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⑦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작성 방법

1. ㉔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2. ㉕유형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로 적습니다.
3. ㉖세율란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
예시)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40(「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